

거제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

[시행 2026.03.12]
(일부개정) 2026.03.12 조례 제2365호

관리책임부서명 : 아동청소년과
관리책임전화번호 : 055-639-4762

제6장 거제 아동 문화 · 관광 체험카드 지원

제25조(지원대상) 지원대상자는 거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으로 한다. <개정 2025.9.25.>

제26조(지원기준 등)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,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제27조(카드발급 신청) ① 카드발급 신청은 지원대상인 아동의 친권자 · 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 · 양육하고 있는 사람(이하 “보호자”라 한다)과 보호자의 대리인이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보호자의 대리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.

1. 「[민법](#)」 [제777조](#)에 따른 친족
2. 「[사회복지사업법](#)」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
3. 사회복지시설장이 보호자인 경우 해당 시설 종사자

③ 제1항에 따라 카드발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위임장을 시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.

제28조(카드사용 등) ① 제27조에 따라 카드를 발급받은 아동(이하 “사용자”라 한다)은 시장이 지정하는 시 관내 영화 · 공연 · 연극, 체육, 관광, 진로탐색 등 다양한 체험 활동(학습)으로 창의적 역량개발 활동이 가능한 장소(이하 “가맹점”이라 한다)에서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가맹점 지정 현황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.

③ 카드 사용기한은 카드를 발급받은 연도의 12월 15일까지로 한다.

제29조(가맹점 등록 및 취소) ①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등록사항을 변경(해지)하고자 할 경우에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변경(해지)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적합여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가맹점이 거짓이나 그 밖의 위법 · 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을 등록하였거나 카드를 결제한 경우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.

제30조(사용자 준수사항) ① 사용자는 카드를 가맹점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.

② 사용자는 카드를 현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교환할 수 없다.

③ 사용자는 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 또는 판매할 수 없다.

제31조(카드의 사용 중지·환수) 시장은 사용자가 제25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제30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카드 사용을 중지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.

제32조(카드관리시스템의 운영 위탁) ① 시장은 카드 관련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카드관리시스템 운영을 전문 수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「[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](#)」에 따른다.

제33조(요금의 정산) ① 시장은 카드 사용금액을 가맹점에서 지정한 계좌로 매월 지급한다.

② 카드관리시스템 운영 수수료는 시장과 수탁자간 체결한 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34조(발급대상자 등의 관리) 시장은 카드의 발급대상자 등을 카드관리시스템 또는 대장을 통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
별표

별표(아동위원증 규격 및 기재사항)

서식

[별지 제1호서식] 거제 아동 문화·관광 체험카드 (재)발급 신청서

[별지 제2호서식] 거제 아동 문화 관광 체험카드 (재)발급 위임장

[별지 제3호서식] 거제 아동 문화관광 체험카드 가맹점 등록 신청서

[별지 제4호서식] 거제 아동 문화관광 체험카드 가맹점 등록 변경(해지) 신청서
